

制止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规定

(2023年3月10日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令第64号公布 自2023年4月15日起施行)

第一条 为了预防和制止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根据《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以下简称反垄断法），制定本规定。

第二条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以下简称市场监管总局）负责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的反垄断统一执法工作。

市场监管总局根据反垄断法第十三条第二款规定，授权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市场监督管理部门（以下称省级市场监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的反垄断执法工作。

本规定所称反垄断执法机构包括市场监管总局和省级市场监管部门。

第三条 市场监管总局负责对下列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进行调查，提出依法处理的建议（以下简称查处）：

- (一) 在全国范围内有影响的；
- (二) 省级人民政府实施的；
- (三) 案情较为复杂或者市场监管总局认为有必要直接查处的。

행정권력 남용 경쟁배제·제한행위 제지 규정

(2023년 3월 10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령 제64호 공포, 2023년 4월 15일 시행)

제1조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제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이하 '반독점법'으로 약칭)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시장총국'으로 약칭)은 행정권력 남용 경쟁배제·제한행위에 대한 반독점법 통일 집행업무를 담당한다.

시장총국은 <반독점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서(이하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로 통칭)에 권한을 부여하고, 당해 행정구역 내의 행정권력 남용 경쟁배제·제한 행위에 대한 반독점법 집행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시장총국과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를 포함한다.

제3조 시장총국은 아래 열거하는 행정권력 남용 경쟁배제·제한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법에 따른 처리 건의(이하 '조사처리'로 약칭)를 제기한다:

- (1)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2) 성급 인민정부가 실시하는 경우;
- (3) 안건의 정황이 비교적 복잡하거나 시장총국이 직접 조사처리

前款所列的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市场监管总局可以指定省级市场监管部门查处。

省级市场监管部门查处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时，发现不属于本部门查处范围，或者虽属于本部门查处范围，但有必要由市场监管总局查处的，应当及时报告市场监管总局。

第四条 行政机关和法律、法规授权的具有管理公共事务职能的组织不得滥用行政权力，实施下列行为，限定或者变相限定单位或者个人经营、购买、使用其指定的经营者提供的商品或者服务（以下统称商品）：

（一）以明确要求、暗示、拒绝或者拖延行政审批、备案、重复检查、不予接入平台或者网络等方式，限定或者变相限定经营、购买、使用特定经营者提供的商品；

（二）通过限制投标人所在地、所有制形式、组织形式等方式，限定或者变相限定经营、购买、使用特定经营者提供的商品；

（三）通过设置不合理的项目库、名录库、备选库、资格库等方式，限定或者变相限定经营、购买、使用特定经营者提供的商品；

（四）限定或者变相限定单位或者个人经营、购买、使用其指定的经营者提供的商品的其他行为。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항에 열거한 행정권력 남용 경쟁배제·제한행위는 시장총국이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조사처리하게 할 수 있다.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는 행정권력 남용 경쟁배제·제한행위를 조사처리할 때 당해 부서의 조사처리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발견하거나, 당해 부서의 조사처리 범위에 속하지만 시장총국이 조사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장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4조 행정기관 및 법률·법규의 수권을 받아 공공사무관리 기능을 보유한 조직은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아래 열거한 행위를 실시함으로써 조직이나 개인으로 하여금 그가 지정한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이하 '상품'으로 통칭)를 경영·구매·사용하도록 제한하거나 변칙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1) 명확한 요구·암시·행정심사 승인 거절 또는 지연, 등록·중복검사·플랫폼이나 인터넷에의 접근 불허 등의 방식으로, 특정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을 경영·구매·사용하도록 제한하거나 변칙적으로 제한;

(2) 입찰자의 소재지·소유제 형식·조직형식 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특정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을 경영·구매·사용하도록 제한하거나 변칙적으로 제한;

(3) 프로젝트 라이브러리·카탈로그 라이브러리·대체자격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등의 불합리한 방식으로 특정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을 경영·구매·사용하도록 제한하거나 변칙적으로 제한;

(4) 조직이나 개인으로 하여금 그가 지정한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을 경영·구매·사용하도록 제한하거나 변칙적으로 제한하는 기타 행위.

第五条 行政机关和法律、法规授权的具有管理公共事务职能的组织不得滥用行政权力，通过与经营者签订合作协议、备忘录等方式，妨碍其他经营者进入相关市场或者对其他经营者实行不平等待遇，排除、限制竞争。

第六条 行政机关和法律、法规授权的具有管理公共事务职能的组织不得滥用行政权力，实施下列行为，妨碍商品在地区之间的自由流通：

(一) 对外地商品设定歧视性收费项目、实行歧视性收费标准，或者规定歧视性价格、实行歧视性补贴政策；

(二) 对外地商品规定与本地同类商品不同的技术要求、检验标准，或者对外地商品采取重复检验、重复认证等歧视性技术措施，阻碍、限制外地商品进入本地市场；

(三) 采取专门针对外地商品的行政许可，或者对外地商品实施行政许可时，设定不同的许可条件、程序、期限等，阻碍、限制外地商品进入本地市场；

(四) 设置关卡、通过软件或者互联网设置屏蔽等手段，阻碍、限制外地商品进入或者本地商品运出；

(五) 妨碍商品在地区之间自由流通的其他行为。

第七条 行政机关和法律、法规授权的具有管理公共事务职能的组

제5조 행정기관 및 법률, 법규의 수권을 받아 공공사무 관리기능을 가진 조직은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영자와 협력 협정, 각서 등을 체결하여 다른 경영자가 관련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다른 경영자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를 실시하여 경쟁을 배제·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6조 행정기관 및 법률·법규의 수권을 받아 공공사무관리 기능을 보유한 조직은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아래 열거한 행위를 실시함으로써 상품의 지역간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1) 타지역 상품에 대해 차별적인 비용항목 설정·차별적인 기준 적용 또는 차별적인 가격 규정·차별적인 보조금 정책 실행;

(2) 타지역 상품에 대해 당해 지역의 동종 상품과 구별되는 기술적 요구·검사기준을 규정하거나 타지역 상품에 대해 중복검사·중복인증 등 차별적 기술 조치를 실시하여 타지역 상품의 당해지역 시장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

(3) 타지역 상품에 대해서만 특별히 행정허가를 하게 하거나, 타지역 상품에 대해 행정허가를 실시할 때 동일하지 않은 허가 조건·절차·기한 등을 설정하여 타지역 상품의 당해지역 시장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

(4) 관문을 설치하거나 소프트웨어 또는 인터넷을 통해 장벽 등 수단을 설치하여 타지역 상품의 시장진입 또는 당해지역 상품의 타지역 반출을 방해하거나 제한;

(5) 상품의 지역간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

제7조 행정기관 및 법률·법규의 수권을 받아 공공사무관리 기능을

织不得滥用行政权力，实施下列行为，排斥或者限制经营者参加招标投标以及其他经营活动：

- (一) 不依法发布招标投标等信息；
- (二) 排斥或者限制外地经营者参与本地特定的招标投标活动和其他经营活动；
- (三) 设定歧视性的资质要求或者评审标准；
- (四) 设定与实际需要不相适应或者与合同履行无关的资格、技术和商务条件；
- (五) 排斥或者限制经营者参加招标投标以及其他经营活动的其他行为。

第八条 行政机关和法律、法规授权的具有管理公共事务职能的组织不得滥用行政权力，实施下列行为，排斥、限制、强制或者变相强制外地经营者在本地投资或者设立分支机构：

- (一) 拒绝、强制或者变相强制外地经营者在本地投资或者设立分支机构；
- (二) 对外地经营者在本地投资的规模、方式以及设立分支机构的地址、商业模式等进行限制或者提出不合理要求；
- (三) 对外地经营者在本地的投资或者设立的分支机构在投资、经营规模、经营方式、税费缴纳等方面规定与本地经营者不同的要求，在安全生产、节能环保、质量标准、行政审批、备案等方面实行歧视性待遇；
- (四) 排斥、限制、强制或者变相强制外地经营者在本地投资或者设立分支机构的其他行为。

보유한 조직은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아래 열거한 행위를 실시함으로써 경영자가 입찰 및 기타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 (1) 법에 따른 입찰 등의 정보를 공표하지 않음;
- (2) 외지 경영자가 현지 특정 입찰 활동과 기타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제한;
- (3) 차별적인 자격요건이나 심사기준을 설정;
- (4) 실제 수요에 부합하지 않거나 계약이행과 무관한 자격·기술 및 경영 조건을 설정;
- (5) 경영자가 입찰 및 기타 경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기타 행위.

제8조 행정기관 및 법률·법규의 수권을 받아 공공사무관리 기능을 보유한 조직은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아래 열거한 행위를 실시함으로써 타지역 경영자가 당해지역에 투자하거나 지사를 설립하는 것을 배제·제한·강제 또는 변칙적으로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

- (1) 타지역 경영자가 당해지역에 투자하거나 지사를 설립하는 것을 거절, 강제 또는 변칙적으로 강제;
- (2) 타지역 경영자에 대해 당해지역에서의 투자규모·방식 및 지사 설립 위치·상업 방식 등을 제한하거나 불합리한 요구를 함;
- (3) 타지역 경영자가 당해지역에 투자하거나 설립한 지사에 대해 투자·경영규모·경영방식·세금납부 등 방면에서 당해지역 경영자와 다른 요구를 규정하고, 안전생산·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품질기준·행정심사 승인, 등록 등의 방면에서 차별적 대우를 실행;
- (4) 타지역 경영자가 당해지역에서 투자하거나 지사를 설립하는 것을 배제·제한·강제 또는 변칙적으로 강제하는 기타 행위.

第九条 行政机关和法律、法规授权的具有管理公共事务职能的组织不得滥用行政权力，强制或者变相强制经营者从事反垄断法规定的垄断行为。

第十条 行政机关和法律、法规授权的具有管理公共事务职能的组织不得滥用行政权力，以办法、决定、公告、通知、意见、会议纪要、函件等形式，制定、发布含有排除、限制竞争内容的规定。

第十一条 反垄断执法机构依据职权，或者通过举报、上级机关交办、其他机关移送、下级机关报告等途径，发现涉嫌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

第十二条 对涉嫌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任何单位和个人有权向反垄断执法机构举报。反垄断执法机构应当为举报人保密。

第十三条 举报采用书面形式并提供相关事实和证据的，有关反垄断执法机构应当进行必要的调查。书面举报一般包括下列内容：

- (一) 举报人的基本情况；
- (二) 被举报人的基本情况；
- (三) 涉嫌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的相关事实和证据；
- (四) 是否就同一事实已向其他行政机关举报、申请行政复议或者向人民法院提起诉讼。

제9조 행정기관 및 법률·법규의 수권을 받아 공공사무관리 기능을 보유한 조직은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영자로 하여금 반독점법이 규정하고 있는 독점행위를 하도록 강제하거나 변칙적으로 강제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 행정기관 및 법률, 법규의 수권을 받아 공공사무관리 기능을 가진 조직은 행정 권력을 남용하여 방법, 결정, 공고, 통지, 의견, 회의록, 서신 등의 형식으로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규정을 제정, 공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직권에 의하거나 신고·상급기관의 지시·다른 기관의 이송·하급기관의 보고 등의 경로를 통해 행정권력남용 경쟁배제·제한행위를 발견한다.

제12조 행정권력 남용 경쟁배제·제한행위 혐의에 대해, 어떠한 조직 및 개인도 반독점법 집행기구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신고인을 위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13조 신고가 서면의 형식을 취하고 관련 사실과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관련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한다. 서면 신고는 일반적으로 아래 열거한 내용을 포함한다:

- (1) 신고인의 기본 상황;
- (2) 피신고인의 기본 상황;
- (3) 행정권력남용 경쟁배제·제한행위 혐의와 관련된 사실과 증거;
- (4) 동일한 사실에 대해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하였거나 행정 재심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

第十四条 反垄断执法机构负责所管辖案件的受理。省级以下市场监管部门收到举报材料或者发现案件线索的，应当在七个工作日内将相关材料报送省级市场监管部门。

对于被举报人信息不完整、相关事实不清晰的举报，受理机关可以通知举报人及时补正。

对于采用书面形式的实名举报，反垄断执法机构在案件调查处理完毕后，可以根据举报人的书面请求依法向其反馈举报处理结果。

第十五条 反垄断执法机构经过对涉嫌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的必要调查，决定是否立案。

被调查单位在上述调查期间已经采取措施停止相关行为，消除相关竞争限制的，可以不予立案。

省级市场监管部门应当自立案之日起七个工作日内向市场监管总局备案。

第十六条 立案后，反垄断执法机构应当及时进行调查，依法向有关单位和个人了解情况，收集、调取证据。有关单位或者个人应当配合调查。

제14조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관할 안건의 접수를 담당한다. 성급 이하의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신고자료를 받거나 안건의 단서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를 7업무일 내에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고 송부해야 한다.

피신고인의 정보가 불완전하고 관련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신고에 대해서는 접수기관이 신고인에게 즉시 보정하라고 통지할 수 있다.

서면 형태의 실명 신고의 경우,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사건 조사 및 처리가 완료된 후 신고자의 서면 요청에 따라 신고 및 처리 결과를 법률에 따라 피드백할 수 있다.

제15조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행정권력 남용 경쟁배제·제한행위 혐의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거쳐 입안 여부를 결정한다.

피조사기관이 상술한 조사기간 동안 이미 관련 행위 정지조치를 취하고 관련 경쟁제한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입안하지 않을 수 있다.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입안일로부터 7 업무일 내에 시장감독관리총국에 보고하고 비치해야 한다.

제16조 입안 후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즉시 조사를 진행하고 법에 따라 관련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상황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취득해야 한다. 관련 조직이나 개인은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第十七条 市场监管总局在查处涉嫌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时，可以委托省级市场监管部门进行调查。

省级市场监管部门在查处涉嫌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时，可以委托下级市场监管部门进行调查。

受委托的市场监管部门在委托范围内，以委托机关的名义进行调查，不得再委托其他行政机关、组织或者个人进行调查。

第十八条 省级市场监管部门查处涉嫌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时，可以根据需要商请相关省级市场监管部门协助调查，相关省级市场监管部门应当予以协助。

第十九条 被调查单位和个人有权陈述意见，提出事实、理由和相关证据。反垄断执法机构应当进行核实。

第二十条 经调查，反垄断执法机构认为构成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的，可以向有关上级机关提出依法处理的建议。

在调查期间，被调查单位主动采取措施停止相关行为，消除相关竞争限制的，反垄断执法机构可以结束调查。

제17조 시장총국은 행정권력 남용 경쟁배제·제한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처리시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조사의 진행을 위탁할 수 있다.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는 행정권력 남용 경쟁배제·제한행위 혐의 조사처리시 하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조사의 진행을 위탁할 수 있다.

위탁받은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위탁범위 내에 위탁기관의 명의로 조사를 실시하며 다른 행정기관·조직 또는 개인에게 조사를 재위탁하면 안 된다.

제18조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는 행정권력 남용 경쟁배제·제한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처리시, 수요에 따라 관련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조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는 협조해야 한다.

제19조 피조사대상 기관 및 개인은 의견을 진술하고 사실, 이유 및 관련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제20조 조사결과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행정권력 남용 경쟁배제·제한행위 혐의를 구성한다고 인정한 경우, 관련 상급기관에 법에 따른 처리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조사기간 동안 피조사기관이 자발적으로 관련 행위 정지조치를 취하고 관련 경쟁제한을 제거한 경우, 반독점 법집행기구는 조사를 종

经调查，反垄断执法机构认为不构成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的，应当结束调查。

第二十一条 反垄断执法机构向有关上级机关提出依法处理建议的，应当制作行政建议书，同时抄送被调查单位。行政建议书应当载明以下事项：

- (一) 主送单位名称；
- (二) 被调查单位名称；
- (三) 违法事实；
- (四) 被调查单位的陈述意见及采纳情况；
- (五) 处理建议及依据；
- (六) 被调查单位改正的时限及要求；
- (七) 反垄断执法机构名称、公章及日期。

前款第五项规定的处理建议应当能够消除相关竞争限制，并且具体、明确，可以包括停止实施有关行为、解除有关协议、停止执行有关备忘录、废止或者修改有关文件并向社会公开文件的废止或者修改情况等。

被调查单位应当按照行政建议书载明的处理建议，积极落实改正措施，并按照反垄断执法机构的要求，限期将有关改正情况书面报告上级机关和反垄断执法机构。

결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반독점 법집행기구가 행정권력 남용 경쟁배제·제한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 조사를 종결해야 한다.

제21조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관련 상급 기관에 법에 따른 처리건의를 제기하는 경우, 행정건의서를 작성하고 동시에 피조사기관에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행정건의서에는 아래 열거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 (1) 주관 기관의 명칭;
- (2) 피조사 기관의 명칭;
- (3) 위법 사실;
- (4) 피조사 기관의 진술 의견 및 채택 상황;
- (5) 처리건의 및 근거;
- (6) 피조사기관의 시정을 위한 기한 및 요구사항.
- (7) 반독점 법집행기구의 명칭·관인 및 날짜.

전항 (5)에 규정된 처리 제안은 관련 경쟁제한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 행위 중지, 관련 계약 해지, 관련 각서 집행 중지, 관련 문서의 폐지 또는 수정 및 문서의 폐지 또는 수정이 포함될 수 있다.

피조사대상 기관은 행정 제안서에 명시된 처리 제안에 따라 시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반독점법 집행기구의 요구 사항에 따라 기한 내에 관련 시정 상황을 상급 기관과 반독점법 집행 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第二十二條 省級市場監管部門在提出依法處理的建議或者結束調查前，应当向市場監管總局報告。提出依法處理的建議後七個工作日內，向市場監管總局備案。

反壟斷執法機構認為構成濫用行政權力排除、限制競爭行為的，依法向社會公布。

第二十三條 市場監管總局應當加強對省級市場監管部門查處濫用行政權力排除、限制競爭行為的指導和監督，統一執法標準。

省級市場監管部門應當嚴格按照市場監管總局相關規定查處濫用行政權力排除、限制競爭行為。

第二十四條 行政機關和法律、法規授權的具有管理公共事務職能的組織涉嫌違反反壟斷法規定，濫用行政權力排除、限制競爭的，反壟斷執法機構可以對其法定代表人或者負責人進行約談。

約談可以指出涉嫌濫用行政權力排除、限制競爭的問題，聽取情況說明，要求其提出改進措施消除相關競爭限制。

約談結束後，反壟斷執法機構可以將約談情況通報被約談單位的有關上級機關。省級市場監管部門應當在七個工作日內將約談情況向

제22조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법에 따른 처리 건의 제기 전 또는 조사종결 전에 시장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법에 따른 처리 건의를 제기한 후 7 업무일 내에 시장총국에 보고하고 비치한다.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행정권력 남용 경쟁배제·제한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한 경우, 법에 따라 사회에 공포한다.

제23조 시장총국은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의 행정권력 남용 경쟁배제·제한행위 조사처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법 집행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엄격하게 시장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권력 남용 경쟁배제·제한행위를 조사처리 해야한다.

제24조 행정기관 및 법률, 법규의 수권으로 공공사무관리기능을 보유한 조직이 반독점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경쟁을 배제하기 위해 행정권을 남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법정대리인 또는 책임자를 면담할 수 있다.

면담에서는 경쟁을 배제·제한하기 위해 행정권력을 남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상황 설명을 듣고 관련 경쟁 제한을 제거하기 위한 개선 조치를 제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면담이 끝난 후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면담 대상 기관의 관련 상급 기관에 면담 상황을 보고할 수 있다. 성급 시장감독부서는 영업일

市场监管总局备案。

第二十五条 约谈应当经反垄断执法机构主要负责人批准。反垄断执法机构可以根据需要，邀请被约谈单位的有关上级机关共同实施约谈。

反垄断执法机构可以公开约谈情况，也可以邀请媒体、行业协会、专家学者、相关经营者、社会公众代表列席约谈。

第二十六条 对反垄断执法机构依法实施的调查，有关单位或者个人拒绝提供有关材料、信息，或者提供虚假材料、信息，或者隐匿、销毁、转移证据，或者有其他拒绝、阻碍调查行为的，反垄断执法机构依法作出处理，并可以向其有关上级机关、监察机关等反映情况。

第二十七条 反垄断执法机构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或者泄露执法过程中知悉的商业秘密、个人隐私和个人信息的，依照有关规定处理。

第二十八条 反垄断执法机构在调查期间发现的公职人员涉嫌职务违法、职务犯罪问题线索，应当及时移交纪检监察机关。

第二十九条 行政机关和法律、法规授权的具有管理公共事务职能的组织，在制定涉及市场主体经济活动的规章、规范性文件和其他政

기준 7일 이내에 시장총국에 면담 상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25조 면담은 반독점법 집행 기구의 주요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필요에 따라 면담 대상 기관의 관련 상급 기관을 초청하여 면담을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면담 상황을 공개하거나 언론, 산업 협회, 전문가 및 학자, 관련 운영자 및 대중 대표를 초청하여 면담에 참석할 수 있다.

제26조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에 대해, 유관 기관 또는 개인이 관련 자료·정보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허위 자료·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를 은닉·훼손·이동시키거나 조사를 거절·방해하는 기타 행위가 있는 경우,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법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 상황을 유관 상급 기관·감찰기관 등에 보고할 수 있다.

제27조 반독점법 집행기구의 직원이 직권남용·직무태만·부정부패 또는 법 집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및 상업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8조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조사기간 동안 발견한 공직자의 직무 위반 및 직무 범죄 혐의 단서는 즉시 규율 검사 및 감독 기관에 인계되어야 한다.

제29조 행정기관 및 법률, 법규의 수권을 받아 공공사무관리 기능을 보유한 조직은 시장 주체의 경제 활동과 관련된 규칙, 규범 문서

策措施时，应当按照有关规定进行公平竞争审查，评估对市场竞争的影响，防止排除、限制市场竞争。涉嫌构成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的，由反垄断执法机构依法调查。

第三十条 各级市场监管部门可以通过以下方式，积极支持、促进行政机关和法律、法规授权的具有管理公共事务职能的组织强化公平竞争理念，改进有关政策措施，维护公平竞争市场环境：

- (一) 宣传公平竞争法律法规和政策；
- (二) 在政策措施制定过程中提供公平竞争咨询；
- (三) 组织开展有关政策措施实施的竞争影响评估，发布评估报告；
- (四) 组织开展培训交流；
- (五) 提供工作指导建议；
- (六) 其他有利于改进政策措施的竞争宣传倡导活动。

鼓励行政机关和法律、法规授权的具有管理公共事务职能的组织主动增强公平竞争意识，培育和弘扬公平竞争文化，提升公平竞争政策实施能力。

第三十一条 本规定自2023年4月15日起施行。2019年6月26日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令第12号公布的《制止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暂行规定》同时废止。

및 기타 정책 조치를 제정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경쟁 심사를 실시하고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시장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행정권력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법에 따라 반독점법 집행 기관에서 조사해야 한다.

제30조 각급 시장감독부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해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의 수권을 받아 공공사무관리기능을 보유한 조직을 적극 지원, 촉진하여 공정경쟁 이념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 조치를 개선하며 공정경쟁 시장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 (1) 공정경쟁 법률 법규와 정책의 홍보；
- (2) 정책 조치 수립 과정에서 공정경쟁 자문 제공；
- (3) 정책 조치 시행에 관한 경쟁 영향 평가를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평가 보고서를 발표
- (4) 조직 교육 및 교류 전개；
- (5) 업무 지도 건의 제공；
- (6) 기타 정책 조치 개선에 유리한 경쟁주창 및 홍보 활동

행정기관 및 법률, 법규의 수권을 받아 공공사무관리기능을 보유한 조직이 주도적으로 공정경쟁 의식을 제고하고 공정경쟁 문화를 육성·선양하며 공정경쟁 정책 실시 능력을 제고하도록 장려한다.

제31조 본 규정은 202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019년 6월 26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명령 제12호로 공포한 '행정권력 남용 경쟁배제, 제한에 관한 잠정 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